현장정비책임자 운영지침

제정 1993.12.15. 개정 2012.09.18. 개정 1999.08.01. 개정 2012.10.25. 개정 2001.09.10. 개정 2013.01.22. 개정 2002.05.02. 개정 2013.07.17. 개정 2002.10.07. 개정 2013.12.04. 개정 2004.10.26. 개정 2014.03.31. 개정 2005.01.21. 개정 2014.08.20. 개정 2005.09.22. 개정 2014.09.29. 개정 2006.09.07. 개정 2014.11.18. 개정 2007.05.14. 개정 2015.06.19. 개정 2010.10.07. 개정 2015.08.17. 개정 2011.09.02. 개정 2016.05.30. 개정 2012.02.21. 개정 2018.06.25. 개정 2012.05.04. 개정 2022.04.20. 개정 2012.06.18. (명칭변경) 개정 2022.05.12. 개정 2022.12.29. 개정 2023.12.28. [생산기술처 정비기획부 042-600-8085]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현장정비책임자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생산 및 공급설비의 정비 및 관로검사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현장정비책임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현장정비책임자는 4,5급 파트장,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를 지칭한다. 단, 3급파트장 보직에 직무 대리로 선임된 4,5급 직원은 【별표1】 운영기준과는 별도로 현장정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3급 파트장 보직 직무대리 선임 시에도 4,5급 파트장 선임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 제3조(운영기준) ① 지사 현장정비책임자(4,5급 파트장,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 정원은 별표1과 같다.
 - ② 4,5급 파트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직위(파트장) 선임 및 해임이 가능하다.
 - ③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는 부서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사장이 각 지사별 정원범위 이내에서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④ 지사의 현장정비책임자 운영기준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본사 운영부서에 승인을 요청하고, 본사 운영부서는 별도 운영기준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 **제4조(직무)** ① 4,5급 파트장으로 선임된 자는 지사내 또는 타지사 인사발령 시 동일한 직위로 적극 반영한다. ②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로 선임된 자는 당해 지사의 부서별 해당분야에 재직 기간 중에 한하여 직무를 가진다. 단, 신설지사는 별도기준으로 운영한다.

- **제5조(임무수행)** ① 현장정비책임자는 사업장별 업무 지휘 계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책임수행 하여야 한다.
 - ② 4.5급 파트장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파트내 분장업무 총괄 및 KOGAS 업무협의
 - 2. 소속 직원의 통솔 및 업무부여
 - 3. 현장업무의 책임수행
 - 4. 파트 안전관리 및 직원 인적관리
 - 5. 일일, 주간업무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6. 기타 관련 부대업무
 - ③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장업무의 책임수행
 - 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중대재해 관련 위험예지 및 안전조치
 - 4. 해당 분야의 기술 관리 및 육성
 - 5. 기타 관련 부대업무
- 제6조(자격요건) ① 4,5급 파트장은 4급1~5급2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기술직원으로 해당분야 동일직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2. 해당분야의 업무지식 및 리더쉽이 우수한 자
 - 3.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자
 - 4.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우"이상이고 인사규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는 해당분야 4급1~6급2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기술직원으로 해당분야 동일직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해당분야의 업무지식 및 리더쉽이 우수한 자
 - 3.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 4.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점이 "우"이상 및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제7조(선발요령)** ① 4,5급 파트장은 제6조 1항의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지사에서 직무수행능력, 경력, 자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배수 범위 내 임명(예정)자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 ② 4,5급 파트장은 본사(정비사업본부) 주관 파트장 선정기준평가표(별표2)에 의거하여 심사를 통해 서열명부의 직원 중에서 선정하며, 동점 발생 시 근무평정 및 다면평정, 경력, 자격사항 순으로 높은자를 선정한다. 만약 모든 사항이 동일할 경우 위원장이 선정한다.
 - ③ 위원장은 생산기술처장 또는 공급기술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비사업본부장이 지명하는 7인의 부장급 이상 직원으로한다.
 - ④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는 지사인사위원회를 통해 제6조 2항의 자격요건에 따라 소속 직원을 평가·심의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 임명(예정)자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 ⑤ 지사장은 서열명부상의 직원 중 해당분야의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로 임명하고, 그 결과를 본사 운영부서에 보고한다.
 - ⑥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4조 5항에 의한 지사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사장이 적격자를 선정하여 해당분야의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로 임명하고, 그 결과를 본사 운영부서에 보고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해당 조항에 대한 사항은 파트장(4,5급)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이며, 지사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은 다음 호의 해당되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정비사업본부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 1. 위원 또는 그 친족인 사람이 부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③ 부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비사업본부장 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본부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⑥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본부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대우)** ① 선임된 현장정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기간 중 직원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선임된 4,5급 파트장에 대하여 보직기간 동안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 ③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직원은 각종 교육, 포상 등에 우선 추천할 수 있다.
- 제10조(현장정비책임자 해임)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정비책임자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다.
 - 1. 자격 요건이 상실된 자
 - 2.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
 - 3. 기타 해당업무가 종료된 경우
 - 4. 기타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4,5급 파트장은 1년 단위로 인사평정지침에 의거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며, 실적저조 등 기준치이하인 경우 필요 시 해임될 수 있다. 해임 여부는 본사(정비사업본부)에서 결정한다.
 - ③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 해임시는 지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한다.
 - ④ 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 보직기간은 선임일 기준 최대 3년으로 하며, 지사 여건에 따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임 및 반장에 대한 수당 지급은 보수규정 개정 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지침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지침은	2001년	9월	10일부터	시호	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ᅕ	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터 시	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경	탱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9월	22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호	탱한다.	부	칙
				10월 7일년 신발요리				칙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호	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일(2013.12.05)로부터 시행형	부 한다.	칙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민지사의 인천 및 경기지사 분리, 강릉분소 승격 1일)로 한다.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반장운영지침)은 2022년 04월 20일부터 '현장정비책임자 운영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增至1】
【增至1】
《개对2001.09.10., 2002.10.07., 2004.10.26., 2005.01.21., 2005.09.22.,
2006.09.07.,2007.05.14., 2010.10.07., 2011.09.02., 2012.02.21., 2012.05.04., 2012.06.18.,
2012.09.18.,2012.10.25., 2013.01.22., 2013.07.17., 2013.12.04., 2014.03.31., 2014.08.20.,
2014.09.29.,2014.11.18., 2015.06.19., 2015.08.17., 2016.05.30., 2018.06.25., 2022.04.20.,
2022.05.12., 2023.12.28.>

현장정비책임자 운영기준

□ 생산기지(4,5급 파트장 및 정비마스터)

구 분	파트장(4,5급)	정비마스터
평택기지	7명	19명
인천기지	10명	23명
통영기지	3명	13명
삼척기지	2명	8명
제주LNG	3명	5명

[※] 동일 생산기지 내에서 파트장 및 정비마스터 총 인원의 10%까지는 정원 조정 가능

□ 관로지사(정비마스터, 구간마스터)

	정비	구간마스터				
본 부		사업소		7.71.	비시다츠	기서ㅁ
기계정비	계전정비	기계정비	계전정비	구간	방식·탐측	시설물
4명 (경기 밸브보수시무소 1명 별도)	4명	1명 (서울 양주사업소, 경기 분당사업소, 부산경남 울산사업소 2명)	1명	1명	1명 (강원 강릉사업소 1명 별도)	1명

[※] 경기지사 분당사업소 정비파트는 정비마스터 1명 별도 운영

파트장 선정기준 평가표

	평가요소	배점	적용기준	비고
	경력점수	20	○ 직무경력- 기술실무경력 2점/년 적용※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	O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자격증 점수	
			기술사 10	
	자격사항		기사, 기능장 8	인사노무처
2			산업기사 6	
계			기능사 4	
량 평			※ 상위 1개 자격증 점수만 적용	
가		30	O 근무평정(50%), 다면평정(50%) 합산하여 환산점수 적용	인사노무처
			환산점수 점수	
	그묘화기		95 이상 30	
	근무평정 및 다면평정		93 이상 ~ 95 미만 25	
			90 이상 ~ 93 미만 20	
			90 미만 10	
			※ 최근 2년 평균 평정점수 적용(단, 다면평정 미적용 대상은 근무평정(100%) 환산점수 적용)	
	소 계	60		
	직무수행능력	15	O 평가위원 선정	
비 계 량 평	적극성 및 책임감	15	 위원장은 생산 또는 공급기술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비사업본부장이 지명하는 7인의 부장급 이상 직원 위원장: 생산 또는 공급기술처장 	
가	성장 가능성	10	- 위원장 · 정안 또는 중합기물서장 위 원 : 본사 3명, 지사 4명	
	소 계	40		
	합 계	100		

[※] 항목별 배점은 상한점수임.